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57

제 목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A

㉠도 ㉡시 ㉢읍 ㉣길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8. 1.부터 2003. 10. 12.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석재가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1. 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 13급으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임금(66,073원 1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7. 1. 30 및 2010. 8. 20. 장해등급이 각각 11급 및 9급으로 상향되어 장해일시금 차액분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 9. 3.부터 같은 해 10. 3.까지 22일(출력일수, 이하 같다) 동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사 경내 정비공사현장의 석재공(석재절단, 재단 및 조각)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2. 1. 30.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 5급으로 상향되고 2014. 5. 12. 심폐기능 악화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로 한 특례임금을 증감하여 산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4. 8. 28. 최종 분진사업장을 ▲로 변경하고 적용 평균임금을 ▲ 퇴직 당시 평균임금(124,100원)으로 변경하여 최근 3년간의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해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 9. 5. ▲의 근무기간이 22일에 불과하여 주된 사업장을 △로 보아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2006. 1. 2.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으로 판정받은 이후 △를 최종 분진사업장으로 하여 산정한 특례임금(66,073원 13전)을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2011. 9. 3.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에 근무하였고 이후 2012. 1. 30.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 5급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을 최종 분진사업장으로 하여 ▲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124,100원)으로 재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진폐증 악화(장해 5급)의 주된 유해사업장을 △가 아닌 ▲로 보아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2006-001588)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은 “(주)△”로, 직종은 “석재가공기 조작원”으로, 채용일자는 “2002. 8. 1.”로, 상병 발병일시는 “2006. 1. 2.”로 상병명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8. 1.부터 2003. 10. 12.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의 석재가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 1. 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 13급으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 사업장을 △로 한 특례임금(66,073원 1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았다.

이후 2007. 1. 30., 2010. 8. 20., 2012. 1. 30., 2014. 5. 12.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이 각각 11급, 9급,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2014. 5. 12. 심폐기능 악화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로 한 특례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는 아래와 같다.

과거병력조회

진단일자	사업장명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¹⁾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3. 1. 7	△	2003. 2. 10. ~ 2. 15.	1/2		F0(정상)	무장해	-
2006. 1. 2.	△	2006. 1. 16. ~ 1. 21.	1/2		F0정상	장해	13급
2007. 1. 30.	△	2007. 2. 26. ~ 3. 3.	2/1	tbi	F0정상	장해	11급
2008. 3. 4.	△	2008. 3. 17. ~ 3. 21.	4A	bu	F0정상	장해	11급
2009. 7. 10.	△	2009. 8. 10. ~ 8. 14.	4A	bu	F0정상	장해	11급
2010. 8. 20.	△	2010. 12. 20. ~ 12. 24.	4B		F1/2(경미장해)	장해	9급
2012. 1. 30.	△	2012. 2. 13. ~ 2. 17.	4B		F1(고도장해)	장해	5급
2014. 5. 12.	△	2014. 5. 19 ~ 5. 21.	4B		F3(고도장해)	요양	1급

1) tbi: 비활동성 폐결핵, bu: 기포

(3) 한편, 처분청이 2014. 9. 3. 작성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2011. 10. 19., 접수번호 2130-2011-4021060),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 보험급여원부(2011-094617)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에서 2011. 9. 3.부터 같은 해 10. 3.까지 22일 근무하다가 2011. 10. 3. ▲ ▷사 경내 정비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정다듬 업무 중에 주변 경계석이 넘어지면서 왼쪽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골절(일반 산업재해)로 2011. 10. 3. 요양하여 2012. 3. 31. 요양종결하였으며 이 때 적용된 평균임금은 124,100원이었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2007-31호)의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르면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 당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등의

우선순위(① > ② > ③)에 따라 질병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1) ~ (3)항”의 내용과 같이 ① 청구인이 △ 근무 당시 2003년 1월 최초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의 병형이 1/2형으로 이미 진단받은 점, ② 청구인이 ▲에 근무하기 전에도 ㉠ 2007년 1월 비활동성 폐결핵(tbi)과 2008년 3월 및 2009년 7월 기포(bu)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고, ㉡ 2003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의 병형이 1/2형에서 2/1형, 4A형, 4B형으로, 장애등급이 13급에서 9급으로, 심폐기능이 정상(F0)에서 경미장애(F1/2)로 진폐병형과 장애등급이 계속 상향되고 심폐기능이 악화된 점, ③ 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정도, 유해·위험요인에의 노출정도와 그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 22일 근무한 사실이 △ 근무 당시에 발병하여 진행된 진폐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폐증 발병과 진행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를 최종 분진사업장 및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 01 . 03 .

[별지]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

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 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애(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애(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애(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애(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애등급 기준

진폐장애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애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애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애(F3)로 확인된 경우
-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애등급 기준
(제83조의2 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2007-31호)

4.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

? 업무처리 절차

④ 적용사업장 사전통보 및 의견 제출

- 재해조사 주관지사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경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 판단 기준에 의해 적용사업장을 판단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